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4. 10. 21.

행정·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10월 7일

나. 회부일자 : 2014년 10월 13일

다. 상정일자 : 제22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14. 10. 21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육춘수 행정지원과장)

□ 개정이유

○ 최근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이에 맞춰 일자리창출 관련 부서인 「지역경제과」 명칭을 「일자리경제과」로 변경하여 일자리 창출 업무 추진을 강화하고자 하며,

○ 현재 재난안전관리 부서(팀)인 「안전치수과 내 재난관리팀」를 주민자치과로 업무를 이관하여 체계적인 재난대응 확립체계 및 안전관리 예방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자 국·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○ 일자리 창출 관련 부서명(과) 명칭 변경 (안 제5조제1항)

·지역경제과 ⇒ 일자리경제과

○ 재난관리팀 부서 이관에 따른 부서명(국·과) 명칭 변경
(안 제3조, 안 4조제1항 및 제2항,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)

·행정지원국 ⇒ 안전행정국

·건설안전교통국 ⇒ 건설교통국

·주민자치과 ⇒ 자치안전과

·안전치수과 ⇒ 물관리과

3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

○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○ 합 의 : 해당없음

○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14. 9. 18 ~ 10. 8 <20일간>

2)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: 의견없음

3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 : 한민섭)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– 「지역경제과」 명칭을 「일자리경제과」로 변경하여 일자리 창출 업무 추진을 강화하고자 하며, 재난대응 확립체계 및 안전관리 예방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자 재난안전관리

부서(팀)인 「안전치수과 내 재난관리팀」를 주민자치과로 업무를 이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
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·조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이 필요함.

- 최근 청년, 중장년, 실버, 주부 등 '일자리'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크게 증대되고 있고 이를 반영하여 「지역경제과」 명칭을 「일자리경제과」로 변경하여 주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일자리 창출 업무 추진을 강화하기 위함.

- 그리고 사회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,
재난안전관리 부서(팀)인 「안전치수과 내 재난관리팀」를 주민자치과로 업무를 이관하여 조직, 인력지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재난 등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개정안으로,

-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, 일자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안전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